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에서의 가언명령과 정언명령*

이 종 권

주제분류 윤리학

주요어 칸트, 도덕철학, 정언명령

요약문

칸트는 명령문을 가언 명령문과 정언 명령문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분석적으로 참인 반면에 후자는 종합적이고 선험적이라고 주장했다. 명제로서 가언적 명령문에 대해서는 당초 칸트가 정의한 분석/종합의 구분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칸트가 말한 명령문을 명제의 형식으로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가언적 명령문과 같은 형식의 명제에 대해 그것이 분석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칸트가 말한 또다른 의미의 ‘분석적’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가언적 명령문이 칸트가 말한 두 번째 의미에서 분석적이라는 주장은 곧 존재로부터 당위가 따라 나온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칸트는 가언적 명령문이 분석적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칸트의 주장이 참이 아님을 논증하고 있다. 칸트가 분석적임을 증명하고 있는 명제는 사실 그가 말하는 가언적 명령이 아니라는 점에서 칸트가 논점 이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칸트가 분석적으로 참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한 가언 명제나 증명하고자 한 가언 명령문 모두 분석적으로 참이기 이전에 참이 아님을 논증했다. 이어가 칸트가 강조하고 있는 정언적 명령문이 의지를 포함하는 가언적 명령문에서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보이는 한편, 그러한 정언 명령문이 선험적으로 참이기 위한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결들여 정언 명령문을 유도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비도덕적 당위에 대해서도 정언적 명령문이 얻어질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명령문을 가언적 명령문과 정언적 명령문으로 나누고 전자가 분석적으로 참인 반면에 후자는 종합적이고 선험적으로 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언급을 글자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우선 분석/종합, 그리고 선험적/경험적의 구분은 명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명령문은 가언적이건 정언적이건 명제가 아니다. 전자는 “만일 ...하다면, —를 하라. 와 같은 형식의 문장이고 후자는 “—를 하라. 와 같은 형식의 문장이다. 그러나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직설법의 문장이나 혹은 그것들이 논리적 연결어로서 연결된 문장의 형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가언적이건 정언적이건 명령문에 대해 그것이 ‘분석적이다’ 혹은 ‘종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명령문을 직설법의 문장 혹은 그것들을 논리적 연결어로 연결된 형식, 즉 조건문이라는 형태의 복합명제로 다시 고쳐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가언적 명령문을 그러한 방식으로 고쳐 쓴다면 ‘A이면 B’와 같은 형식의 명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명제에 대해 선험/경험의 구분은 적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칸트가 정의한 의미에서 분석/종합의 구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 칸트는 분석 명제를 술어가 주어의 개념에 (은밀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주어에 속하는 명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그 명제가 ‘주어—술어’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제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A이면 B’와 같은 가언문 혹은 조건문은 그러한 형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가언적 명령문에 대해서는 칸트가 당초 정의했던 대로 ‘분석적’ 혹은 ‘종합적’이라는 낱말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가언 명령문이 분석적이라는 칸트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직설법의 문장들이 연결어로 연결된 형식의 명제에 대해서도 분석적, 종합적의 술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용어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래에서는 우선 칸트가 말하는 명령문을 단순 명제나 복합 명제로 표현할 것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과 종합을 명제 일반에 적용할 수

있게끔 칸트의 저술에서의 칸트의 언급을 참고하여 그 개념에 대해 보다 일반화된 정의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분석의 정의에 입각해서, 가언적 명령문이 분석적이라는 칸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정언적 명령문이 종합적이고 선험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1. 존재와 당위

명령은 행위로서 흔히 언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열린 창문을 닫으라는 명령은 “창문을 닫아라. 라는 명령문을 발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명령은 이성적인 동물인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신을 믿는 사람들은 흔히 신이 인간에게 내린 명령도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어떤 객관적인 원리가 존재하여 인간의 의지에 기속적인(necessitating) 명령을 내림으로써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의지에 기속적인 원리를 표상하는 명령(Gebot)을 그 원리를 정식화하는 언어적 표현인 명령문(Imperativ)과 구분하고 있다.

의지에 기속적인 한에서 객관적인 원리의 표상을 (이성의) 명령이라고 하며 그 명령을 정식화한 것을 명령문이라고 한다.¹⁾

그렇다면 명령문은 어떤 형식을 지니는가? 일상 언어에서는 명령문은 “X를 하라(Do X). 와 같은 형식을 지닌다. 사실 칸트는 정언 명령문(kategorische Imperativ)이 단 하나 밖에는 없다고 말하면서 그 명령이 “그 준칙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는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1) G 4:413. 여기서 『도덕 형이상학 정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의 쪽 번호는 *Immanuel Kants Schriften, Ausgabe der königlich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Berlin: W.de Gruyter) 판의 쪽 번호를 지칭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다.

칸트의 이 예로부터 그가 명령문으로서 위와 같은 형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칸트는 명령과 명령문을 구분한 위의 인용문에 이어서 모든 명령문은 당위(ought)를 통해 표현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칸트가 문제 삼고 있는 모든 명령문이 다음과 같은 언어적 형식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 A 는 X 를 하여야 한다.(A ought to do X .)

나는 (1)이 칸트가 말하는 (정언적) 명령문의 표준적인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Do X 와 같은 형식의 명령문은 모두 (1)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이유로는 칸트는 명령문에도 ‘분석적’이나 ‘종합적’이라는 술어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른바 정언적 명령문이 종합적이고 선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종합적’ 혹은 ‘분석적’과 같은 술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문법적으로 명령문의 형식을 지니는 문장이 아니라 직설법의 형식을 지니는 문장들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명령문의 기본형식으로 의식하고 있던 것은 (1)과 같은 형식의 문장이라고 생각된다.²⁾

그런데 (1)과 같은 형식의 명령문은 사실 칸트가 말하는 정언적 명령문에 해당한다. 칸트는 그러한 명령문 말고도 가언적인 형식의 혹은 조건적인 명령문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명령문은 가언적인 형태로서 (1)과 같은 명령문이 그 후건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가언적 명령문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닐 것이다.

(2) $S \rightarrow A$ 는 X 를 하여야 한다.(If S , A ought to do X .)

2) 패이튼(H. J. Paton)도 그의 *Categorical Imperative*, 115 쪽에서 “모든 합리적 존재는 그 자체로 선한 행위를 의욕해야 한다.(Every rational being ought to will the action good in itself) 가 정언적 명령문의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2)에서 기호 ‘→’는 ‘...이면’을 의미한다. 칸트는 (2)와 같은 형식의 가언적 명령문이 참이면 분석적으로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칸트가 『순수이성비판』 2판 서론에서 술어가 주어의 개념에 속하는 판단을 분석 판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이러한 정의는 오직 “S는 P이다.(S is P) 와 같은 판단 내지는 문장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분석성의 정의에 의거해서는 (2)와 같은 가언적 문장 혹은 조건문은 분석적 혹은 종합적임을 판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칸트는 “모든 물체는 연장적이다.(All bodies are extended) 라는 문장의 예를 들어 ‘물체’의 개념이 지니고 있는 다양을 분석해서 그 가운데 ‘연장’이라는 술어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석적이라고 말하고 있다.³⁾ 그런데 뒤이어 술어가 주어의 개념에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주어의 개념에 모순율(principle of contradiction)에 따라 술어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⁴⁾ 이 말은 “모든 물체는 연장적이다. 라는 판단을 부정할 때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연장적’이라는 술어가 ‘물체’라는 주 개념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그 문장이 분석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칸트의 언급은 그가 분석 판단에 대한 또 하나의 기준으로서 ‘그것을 부정하면 모순에 빠지게 되는 판단’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분석성의 기준은 (2)와 같은 가언 문장 혹은 조건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다. 따라서 우리는 칸트가 어떤 (2)와 같은 형태의 조건문에 대해 분석적이라고 말할 경우, 그것을 부정하면 모순에 빠진다는 분석성의 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2)와 같은 형태의 어떤 문장이 위에서 말한 칸트적인 의미에서 분석적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그 문장은 논리적으로 참이며 그 말은 또한 다음과 같은 추론이 논리적으로 타당(valid)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Kant(1999), B 11 쪽.(B는 관례대로 *Kritik der reinen Vernunft*의 2판을 가리킴.)

4) Ibid., 12쪽.

$$(3) \quad \frac{S}{A \text{는 } X \text{를 하여야 한다.}(A \text{ ought to do } X.)}$$

이제 추론 (3)에서의 전제 S가 당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고 하자. 이 경우 (3)과 같은 추론이 타당한 것으로 성립한다면 그것은 곧 이른바 존재(is)로부터 당위(ought)가 타당하게 추론된다는 말과 다름없다. 다시 말해 어떤 가언적 명령문이 분석적이라는 칸트의 언급은 존재로부터 당위가 추론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정말로 존재로부터 당위가 논리적으로 이끌어 나올 수 있는가?

설은 그의 1964년 논문에서 존재로부터 당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이 드는 예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다.

1. 존스가 “스미스, 자네에게 5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함세. 라고 발설했다.
2.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3.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었다.
4.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5.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⁵⁾

설은 곧 존스가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혹은 그러한 취지의 발설을 했다는 사실로부터 존스가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끌어내고 있다. 설의 주장이 옳다면 정운찬 씨가 총리직을 맡아달라는 대통령의 제의를 수락했다는 사실, 혹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 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로부터 정운찬 씨가 총리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혹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며 따라서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유도될 것

5) Searle(1964), 44쪽.

같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언 판단들이 분석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존스가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정운찬 씨가 총리직 제의를 수락했다 → 총리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FTA 조약을 체결했다 → 미국과 우리나라는 FTA 조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위의 예가 모두 참이라면 존스와 정운찬 씨가 짊어지게 될 의무는 도덕적 의무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우리나라가 짊어지게 되는 의무는 (국제)법상의 의무인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언 명령문은 분석적인가?

위의 절에서 약속, 수락의 사실을 기술하는 어떤 문장으로부터 당위를 표현하는 문장이 논리적으로 유도되는 듯하며 따라서 그러한 문장들을 가언문을 만드는 연결어로 연결하여 나온 가언문, 즉 전건이 약속이나 수락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고 후건이 당위를 표현하는 가언문이 분석적으로 성립하는 것 같다는 것을 본 바 있다. 그런데 칸트는 어떤 합리적인 존재의 심적 상태에서부터 당위적인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어떤 x 가 W 를 욕구(desire)하고 있다고 하자. 그가 W 를 욕구하는 이유는 W 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 경우 x 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통해 W 를 실현하려 할지 모른다. 그런데 주어진 상황에서 x 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그것을 함으로써 W 를 실현시킬 개연성이 있는 행위이고 다른 한 가지는 W 를 실현시킬 개연성이 전혀 없는 행위이다. 전자

의 행위는 그 행위가 W 를 인과적으로 가져올 확률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위와 W 사이에 얼마만큼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행위이다. x 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행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그러한 행위 가운데 하나를 **해야만** 하는가? 만일 해야만 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합리적인 존재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인가? 그 행위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서 그 행위를 함으로써 지불해야 할 비용을 뺀 값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W 를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이 p 라고 하자. 그리고 W 를 실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R 이라고 그 행위를 함으로써 지불해야 할 대가를 C 라고 할 때, $p \cdot R - (1-p) \cdot C$ 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⁶⁾ 합리적인 행위는 그 값을 극대화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합리적인 행위자에 대해 다음 (4)와 같은 가언적 명령문이 성립할지 모른다.

(4) 합리적인 행위자가 W 를 욕구한다 → 그는 W 를 인과적으로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 가운데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칸트는 형식적인 인식인 논리학을 제외하고 일정한 대상과 그 대상을 지배하는 법칙에 관한 실질적인 인식을 물리학과 윤리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자연에 관한 인식이며 후자는 도덕에 관한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다.⁷⁾ (4)의 후건에서 말하는 당위가 도덕적 당위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4)가 참이라면 그것은 자연에 관한 명제일 수가 없다. 즉 그것은 욕구에 관한 자연 법칙을 기술하는 명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6) $p \cdot R - (1-p) \cdot C$ 는 말하자면 확률론에서 말하는 문제의 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치(expected value)라고 할 수 있다.

7) G 4:387

욕구와 관련하여 성립하는 자연 법칙은 없는 것인가?

어떤 특정한 행위자에 대해 그가 W 를 욕구하는 사건을 $D(W)$ 로 쓰기로 하자. 또한 그가 욕구하는 W 에 대해 그것을 인과적으로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행위 가운데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I(W)$ 라고 하자. 또한 그 행위자가 X 를 믿는다는 것을 $B(X)$ 로 표시하기로 하고 어떤 행위 A 를 한다는 것을 $P(A)$ 로 쓰기로 하자. 만일 (4)에서 말하는 행위자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 가운데 A 가 $I(W)$ 라고 믿었다면 A 를 하게 될지 모른다. 즉 다음이 성립할지 모른다.

$$(5) \quad D(W) \& B(A=I(W)) \Rightarrow P(A)$$

(5)는 어떤 합리적인 행위자가 W 를 욕구하고 A 가 W 를 인과적으로 초래하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라고 그가 믿었다면 그는 A 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4)와는 달리 (5)에서 쌍화살표를 사용한 것은 사건 $D(W)$ 와 $B(A=I(W))$ 가 사건 $P(A)$ 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합리적인 행위자가 W 를 욕구한다면 이제 그에게서 그것은 목적이 된다. 그러한 목적을 설정한 순간 그는 그러한 목적을 실현할 최적의 수단이 되는 행위를 찾게 되고 어떤 행위 A 가 그러한 최적의 수단이라고 믿게 되면 그는 A 를 행하게 될 것이다.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욕구이지만 그러한 욕구의 대상을 실현할 최적의 수단을 찾는 것은 이성이다. 그러므로 욕구를 실현하는 일에 관한 한 이성은 욕구를 실현할 수단 내지는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5)는 이성을 목적이 아닌 수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흄과 같은 경험주의자들이 받아들일 법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만일 (5)가 참이라면 도덕이 아닌 자연에 관한 법칙을 진술하고 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는 참이라고 볼 수 없다.⁸⁾ 행위자가 W

8) (5)가 성립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욕구 및 그와 관련된 믿음 그리고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 때문에 성립할 것이다. 욕구 및 믿음이 생기면 (5)에서 말하는 행위가 반드시 인과적으로 결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5)를

를 원하고 또한 A 가 W 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A 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따라서 A 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치 pW 에 비해 A 를 하는 데 드는 비용 C 가 너무 크다고 생각할 경우 설사 A 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A 를 하는 것을 단념할 수 있을 것이다.

(5)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더 중요한 경우는 서로 상반된 욕구로 인해 딜레마 상황이 빠지는 경우이다. 지금 어떤 행위자가 W_1 와 더불어 W_2 를 욕구하고 있는데 W_1 을 실현할 수 있는 행위 A_1 과 W_2 를 실현할 수 있는 행위 A_2 는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할 경우 반드시 다른 대안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W_1 을 욕구했다고 해서 그러한 욕구가 W_2 에 대한 욕구를 능가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 A_1 을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해 (5)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4)는 성립하겠는가?

(4)는 어떤 것을 합리적인 행위자가 욕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합리적인 행위자가 화성을 가고 싶은 욕구를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화성을 가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선택 가운데도 화성을 가는 일을 성사시킬 개연성이 있는 행위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화성을 감으로써 그가 얻을 수 있는 만족 대신에 그러한

만족하는 욕구와 믿음이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욕구 가운데 충동적으로 생기는 욕구가 있는가 하면 지속적인 욕구도 있다. 후자의 경우를 칸트는 경향(Neigung)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경향에 해당하는 욕구에서 나온 행위에 대해서는 (5)를 참으로 하는 욕구와 믿음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충동적인 욕구에서 출발한 행위에 대해서도 (5)를 참으로 하는 믿음이 발견될지는 불분명하다. 충동적인 욕망은 동물적인 욕망에 더 가까운데 충동의 경우에도 (5)를 만족하는 욕망과 믿음이 발견된다면 동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욱 참인 것으로 성립할 것이다.

행위를 함으로써 지불해야 할 대가가 큰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p \cdot R - (1-p) \cdot C$ 의 값이 양수인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안 가운데 하나를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행위를 하겠다는 실천적인 의지가 없이 단순히 욕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그러한 실천적 의지가 동반된 욕구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어떤 행위자가 실천적 의지가 동반된 욕구를 한다면 그는 그것을 의욕(wollen)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4)와 같은 가언적 명령이 분석적 진리로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다.

숙련의 명령문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특별히 논의할 거리가 못되는 것 같다. 목적을 의욕하는 자는 누구든 (이성이 그의 행위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들도 의욕하게 마련이다. 의욕에 관한 한에 있어 그 명제는 그러므로 분석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나의 결과로서 의욕하는 순간, 행위의 원인으로서 나의 원인성이, 즉 수단의 사용이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명령문은 이 목적을 의욕한다는 개념으로부터 그 목적에 필요한 행위들의 개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¹⁰⁾

필자는 칸트가 말하는 숙련의 명령문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식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5)는 욕구가 개입된 자연적 질서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4)는 당위적인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합리적 존재에 있어서는 이성의 존재가 (5)에서 말하는 자연적 질서가 항상 성립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므로 이성이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4) 및 (5)와 같은 명제가 모두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물론 (4)와 (5)에 등장하는 ‘합리적 행위자’는 동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성이 없는, 욕망의 한 형태인 충동에 지배되는 동물에 있어서는 (5)와 유사한 인과 관계는 성립하지만 (4)와 같은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10) G 4:417

(6) 합리적인 행위자가 W 를 의욕한다(wollen). → 그는 W 를 인과적으로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 가운데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6)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칸트의 표현 대신에 ‘목적은 인과적으로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 가운데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숙련된 명령문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칸트의 물음은 “숙련된 명령문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에 대한 칸트의 답변은 그것들이 분석 명제로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만일 (6)이 숙련된 명령문의 정확한 정식화라면 그리고 그것이 분석적으로 정당화된다면 합리적인 행위자가 어떤 것을 의욕한다는 전제로부터 그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따라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칸트가 분석적인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명제는 (6)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명제인 것으로 보인다.

$$(7) \quad V(W) \& B(A=I(W)) \rightarrow V(A)$$

(7)에서 $V(W)$ 는 문제의 행위자가 W 를 의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은 그 행위자가 W 를 의욕하고 또한 A 가 W 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행위라고 그가 믿는다면 그는 A 를 의욕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가 분석적이라고 주장하는 명제가 (6)이 아닌 (7)이라는 것은 위의 인용문에 뒤이은 다음과 같은 칸트의 언급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의 선분을 확실한 원리에 따라 이등분하자면, 선분의 양끝에서 두 개의 호(弧)를 그려야만 한다는 것을 수학이 오로지 종합적 명제들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특정한 결과가 오로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음을 내가 안다면 내가 그 결과를 완벽하게 의욕할 경우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도 의욕한다는 것은 분석적인 명제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나를 통해 일정한 방식

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결과인 것으로 표상하는 일과 그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행위하는 나를 표상하는 일은 전적으로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¹¹⁾

위의 인용문에서 칸트는 어떤 것을 의욕하고 또한 어떤 행위가 의욕하는 바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임을 안다면 그 행위도 의욕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7)은 전건에서 어떤 행위가 의욕하는 바를 실현할 수단으로 필요함을 안다는 조건을 어떤 행위가 의욕하는 바를 위한 최적의 수단임을 믿는다는 조건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의 목적에 대해 그것을 실현할 수단인 행위가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 행위를 의욕하는 데는 그것이 최적임으로 꼭 알 필요는 없으며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7)에서 전건에서의 조건 $V(W)$ 를 후건과 바꾸어 놓은 다음과 같은 명제를 생각해보자.

$$(8) \quad V(A) \& B(A=I(W)) \rightarrow V(W)$$

(8)은 행위자가 A 를 의욕하고 더욱이 A 가 W 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임을 그가 믿고 있다면 그는 W 를 의욕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인이 남편에게 모종의 독약을 먹이면 남편의 죽음이 초래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독약을 먹일 것을 의욕했다면 그 여인은 남편의 죽음을 의욕한 것이다. (8)은 행위와 그 행위가 수단이 되는 목적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참인 것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분석적인 명제이다. 그러면 (7)도 칸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분석적으로 참인가?

(7)의 경우에도 딜레마 상황이 반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여인과 외국으로 도피해 사는 것이라고 믿고

11) G 4:417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는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에게 불효를 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욕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할지 모른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어떻게 해서든 결혼하고 싶어 싶다.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국으로 도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여인과 외국으로 도피하기 까지를 의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의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어머니에게 불효하지 않기를 더 의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딜레마 상황이 아니더라도 현재화(顯在化)되지 않은 형태의 앎과 믿음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7)이 참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논리학자가 타당한 논증의 형식은 모두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추리 상황에서 그러한 형식에 따라 추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의 상황에서는 논리학자보다는 탐정이 더 유능하게 추리를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논리학자가 그 모든 타당한 추론 규칙을 알고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그러한 앎을 현재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칸트의 예에서도 어떤 행위자가 수학 시간에 선분의 양끝에서 두 개의 호를 그림으로써 선분을 이등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다고 해도 집에 돌아와 동생이 선분을 이등분해 달라고 했을 때 꼭 그러한 앎을 현재화하여 그런 식으로 선분을 이등분하려는 행위를 의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당황해 있을 때 형이 선분의 양 끝에서 선분을 이등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는 그것을 이미 배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절맷다고 탄식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바로 이전에는 그는 이등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이등분하기를 의욕했지만 그 방법대로 행하려는 것은 의욕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7)은 참이 아니면 분석적으로 참인 것은 더욱 아니지만 설사 분석적으로 참인 명제라고 해도 그것은 칸트가 분석적임을 증명해야 하는 명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의욕한다는 사실로부터 당위를 이끌어 내는 가언 명령문은 (7)이 아닌 (6)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6)은 분석적으로 참인가?

필자는 (4)와 마찬가지로 (6)도 분석적으로 참이기 이전에 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욕구를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욕구를 실현할 적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어도 3년간은 고시원에서 법학공부에 올인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자. 이 경우 그 사람이 반드시 3년간 고시원에서 법학공부에 올인해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할 확률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함으로써 얻게 될 이득을 곱한 기대이익이 기대되는 손해에 비해 적을 경우, 오히려 그 사람은 법학공부에 올인해야 하기보다는 차라리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조계로 진출하려는 욕구를 버려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칸트가 분석적으로 성립한다고 주장한 명제는 가언 명령문이 아니며 칸트가 말하는 가언 명령문은 분석적으로 참이기 이전에 참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칸트는 가언 명령문과는 달리 정언 명령문은 종합적이며 또한 선형적으로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에서 칸트가 말하는 정언 명령문이 어떤 형태로 성립하는가를 보기로 한다.

3. 합리적 존재와 정언 명령문

어떤 행위자가 W_1 을 의욕함과 동시에 W_2 를 의욕했다고 하자. 그런데 W_1 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행위 A_1 과 W_2 를 의욕할 수 있는 최적의 행위 A_2 가 서로 충돌한다고 하자. 다시 말해 그 두 행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며 그 가운데 하나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행위를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하자.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려는 의욕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과대학원에 진학하여 의사가 되고 싶은 의욕도 있다. 이 경우 그 행위자는 어떤 행위를 선택할지 갈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 혹은 딜레마 상황을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칸트가 (6)과 같은 형태의 가언 명령문이 분석적으로 성립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그 행위자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¹²⁾

딜레마 상황은 어느 정도 행위자에게 갈등을 유발하지만 심각한 갈등은 위의 예처럼 행위를 통해 실현하려는 목적이 현실적인 경우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적을 의욕하면서도 한편으로 도덕적인 선을 의욕하는 경우이다. 지금 행위 B 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목적 W 를 원하는 행위자 x 가 있다고 하자. 칸트가 말한 대로 (6)이 분석적으로 성립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9) x 가 W 를 의욕한다 $\rightarrow x$ 는 B 를 해야 한다

그런데 x 는 동시에 선을 의욕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x 가 어떤 행위 A 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면 다음이 성립할 것이다.

(10) x 가 선을 의욕한다 $\rightarrow x$ 는 A 를 해야 한다

(9)에서 B 가 W 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행위인 것처럼 (10)에서의 A 도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자가 의욕하고 있는 선을 실현하는 데 수단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칸트가 스스로 부과한 철학적 과제는 과연 어떤 행위가 선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가 하는 것이었다.

만일 A 와 B 가 충돌하는 상황이면 이것을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가 성립한다고 해도 그 경우 x 가 지게 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10)이 성립한다면 그가 지게 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다. (10)이 만일 분석적으로 성립한다면 그것은 선을 의욕한다는 사실로부터 도덕적 당위가 도출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을 의욕한다는 사실이 윤리적 사실이라면 (10)이 분석적이

12) 각 행위를 했을 때 얻게 되는 기대치가 큰 쪽, 즉 $p \cdot R - (1-p) \cdot C$ 의 값이 큰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도 해도 사실로부터 당위가 도출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반드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W_1 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행위와 W_2 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행위가 충돌할 때, 합리적인 행위자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아마도 기대치가 큰 쪽의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답변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처럼 현실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와 선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가 서로 충돌할 때, 즉 비도덕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의무가 충돌할 때, 어떤 의무를 우선할 것인가?

칸트는 도덕적 의무가 항상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즉, 위에서처럼 x 가 선을 의욕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목적 W 를 의욕할 때, 전자를 의욕함으로써 지게되는 도덕적 의무가 W 를 의욕함으로써 지게 되는 의무를 압도하며 따라서 x 는 궁극적으로 B 가 아닌 A 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의지가 유일한 선일 필요도 완전한 선일 필요도 없으나 그럼에도 최고의 선이어야만 하고 여타의 모든 선을 위한, 심지어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위한 조건이어만 하기 때문이다. (G 4:396)

(9)나 (10)은 자연이 아닌 당위의 차원의 명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연의 질서를 반영하지 않는다. 자연의 차원의 명제는 인과적인 관계를 기술한다. 그러나 선의지가 반드시 A 라는 행위를 인과적으로 결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가 선을 의욕했다는 것으로부터 인과적으로 그가 A 를 했다는 것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A 와 충돌하는 행위에 의해서만 실현이 가능한 어떤 욕망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선의지를 휘방하는 그러한 것을 욕구하지 않는 존재라면 그는 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항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는 그가 도덕적 의무를 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공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욕구하는 대로 행동하더라도 도덕적 한계를 넘지 않는 존재는 그의 어떤 욕구도 그의 선의지를 휘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칸트에 있어 것처럼 욕구에

혜방받지 않는 의지, 즉 완전한 선의지를 지닌 존재는 신이며 신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신적인 의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성한 의지에 대해서는 어떤 명령도 타당하지 않으며 당위가 설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의욕이 이미 스스로 법칙과 필연적으로 부합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령문이란 이러저러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예를 들어 인간 의지의 주관적 불완전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정식에 지나지 않는다.¹³⁾

그러므로 합리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참이 아니다.

$$(11) \quad x \text{가 선을 의욕한다} \Rightarrow P(A)$$

만일 선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행위 A 에 대해 (11)이 참일 경우, 즉 A 가 선의지로부터 인과적으로 결과된 행위인 경우에 한해 칸트는 도덕적 가치를 인정한다. 어떤 행위자가 선과 더불어 W 를 의욕했는데, 각각 서로 배타적인 두 행위 A 와 B 에 의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그 행위자가 A 를 했다면 그것은 그 행위의 원인이 선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칸트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선과 W 가 동시에 동일한 행위 A 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가 A 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에 도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행위의 원인이 선의지가 아닌 W 에 대한 욕구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후자의 행위는 단지 의무에 부합할 따름이지 의무로부터 나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본다.¹⁴⁾

13) G 4:414

14) G 4:398

(9)는 의욕하는 목적과 그것을 실현할 수단이 되는 행위 사이에 성립하는 가언적 명령문으로서 칸트는 그러한 명령문이 분석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10)은 선을 행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실현할 수단이 되는 행위를 연결하는 가언적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분석적이라고 할 것인가?

(10)이 분석적으로 참이건 아니건 칸트는 도덕적 의무에 관해서는 (10)과 같은 가언적 형태의 명령문이 아니라 정언적 형태의 명령문이 참인 것으로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10)과 같은 형태의 명령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칸트가 말한 바에 비추어 볼 때, 필자는 (10)과 같은 가언적 명령문으로부터 정언적 명령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칸트는 x 가 욕구에 영향을 받는 이성적인 존재인 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분석적으로 참인 것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12) 모든 이성적 존재는 선을 의욕한다.

위의 명제와 (10)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언적 형태의 선형적이고도 종합적인 명령문을 얻을 수 있다..

(13) 모든 욕구에 영향을 받는 이성적 존재는 A 를 해야 한다

(12)는 종합적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술어가 주어의 개념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을 부정해도 모순이 빠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10)이 분석적이면 선형적이다. 그런데 만일 (12)가 선형적으로 참이라고 하면 (10)과 (12)로부터 논리적으로 유도되는 (13)도 선형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언적 명령문인 (13)은 종합적인 명제이면서 선형적으로 참이 될 것이다. 이제 칸트에게서 남은 과제는 (13)을 참이 되게 하는 A 가 어떤 종류의 행위인가 하는 것이다.

칸트는 (9)를 만족시키는 B 에 대해서는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행위자

가 의욕하고 있는 W 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하다고 말하고 반면에 (13)을 만족시키는 A 에 대해서는 자체로서 선한 것으로 표상된다고 말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위의 추론이 옳다면 A 도 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선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13)과 같은 형태의 정언 명령문이 성립함을 보았다. 그러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도 (13)과 유사한 정언 명령문이 성립하지 않겠는가? 칸트는 행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합리적인 존재자들에게 (명령문이 말하자면 의존적인 이들에게 적용되는 한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전제할 수 있는 하나의 목적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단지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 그들 모두가 예외없이 가지고 있다고 안심하고 전제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하려는 목적이다.¹⁶⁾

따라서 칸트에 의하면 (12)와 유사한 다음이 성립한다.

(14) 모든 이성적 존재는 행복을 의욕한다.

그러므로 (10)과 (12)로부터 (13)을 얻은 것과 유사한 절차에 의해 (9)와 (14)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다.

(15) 모든 이성적 존재는 B 를 해야 한다

만일 (14)가 종합적이고도 선형적으로 참인 명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9)가 분석적으로 참인 명제라면 (15)도 종합적이고도 선형적인 명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욕구를 실현할

15) G 4:414

16) G 4:415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정언적인 형태의 선천적이고도 종합적인 명령문이 참으로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칸트에 의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왜냐하면 B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행위인데 “어떠한 행위가 정말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인지를 어떤 원칙에 따라 흠잡을 데 없이 확실하게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 17)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라는 개념을 이루는 요소는 모두 경험적인 것이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는 한 “아무리 통찰력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한한 존재로서는 여기서 자신이 진정으로 의욕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정된 갖기가 불가능하다. 18)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행복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을 중용을 행하는 것이다. 중용이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명제는 선형적이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선형적이라면 “모든 이성적 존재는 중용을 행하여야 한다. 는 명제는 종합적이고 선형적인 것으로 성립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13)과 같은 종합적인 정언 명령문을 선형적으로 참인 명제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말해주는 선형적인 명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칸트가 착수한 작업이 바로 정언 명령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식화하는 일이었다.

4. 맺음말

칸트는 명령문을 가언 명령문과 정언 명령문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분석적으로 참임 반면, 후자는 종합적이고도 선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칸트가 분석적임을 증명한 명제는 그가 말한 가언 명령문과는 다른 것이며 칸트가 분석적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한 가언 명제나 증명하고자 한 가언 명령문 모두 분석적으로 참이기 이전에 참이 아님을 논증했다.

17) G 4:418

18) G 4:418

또한 도덕적 당위에 대해서도 칸트가 말한 가언적 형태의 명령문에서 출발하여 정언적 명령문이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보았으며 유사한 방법으로 비도덕적 당위에 대해서도 정언적 명령문이 얻어질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도덕적 당위와 관련된 정언 명령문이 종합적이고도 선형적으로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다. 필요한 것은 선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말해주는 선형적 명제를 확보하는 일인데 칸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명제를 확보하려 했는가 또한 그 과정이 타당했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은 이 글에서 목표하는 범위를 넘는다.

(중앙대학교)

참고문헌

- 맹주만, 김형주(2009), “칸트의 정언명법에 대한 명제적 해석”, 『철학탐구』 25집, 23-63 쪽.
- Kant, I.(2005), *Grundlegung zur der Metaphik der Sitten*,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정초』, (대우고전총서 016), 아카넷.
- _____ (2002), *Grundlegung zur der Metaphik der Sitten*, Allen W. Wood 옮김, *Groundwork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Kritik der reinen Vernunft*, Paul Guyer와 Allen W. Wood 옮김, *Critique of Pure Rea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ton, H. J., *The Categorical Imperative: A Study in Kant's Moral Philosophy*, Hutchison's University Library.
- Searle, John(1964), “How to derive ‘ought’ from ‘is’?”,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73, No. 1, 43-58쪽.
- Timmermann, J(2007), *Kant's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A Comment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On Hypothetical and Categorical Imperatives in Kant's *Grundlegung zur der Metaphysik der Sitten*

Jong Kwon Lee

Kant classifies imperatives into two groups: hypothetical and categorical imperatives. He claims that the hypothetical imperatives are analytic and the categorical ones are synthetic *a priori*. This paper shows how to rephrase what Kant calls hypothetical and categorical imperatives in the form of propositions. To such hypothetical propositions we cannot apply the terms 'analytic' and 'synthetic' as Kant originally defined in his *Critique of Pure Reason*. So in order to speak 'analytic' of the hypothetical imperatives it is necessary to adopt another Kant's definition of 'analytic'. This paper discusses in what sense a hypothetical imperative can be said to be analytic and shows that the claim that a hypothetical imperative is analytic in the second sense leads to the claim that *ought* is derived from *is*.

Kant claimed that it can be proved that hypothetical imperatives are analytic.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Kant's claim is not true. Firstly, Kant argues beside the point in that what he tries to prove to be true are definitely different from a hypothetical imperative whose truth he declared he would prove. Furthermore, neither the hypothetical propositions which Kant believed that he proved to be analytically true nor the hypothetical imperatives whose analytical truth he declared that he would prove are simply true, not to mention analytically true.

Kant stressed that categorical imperatives are sharply distinguished from hypothetical ones, but this paper shows how the former can be derived from the hypothetical imperatives involving the free will and

investigates what conditions a categorical imperative should meet in order to be an *a priori* truth.

Key Words: Kant, moral philosophy, categorical imperative

이종권 e-mail: leejk@cau.ac.kr

투 고 일	2009년 10월 15일
심 사 일	2009년 11월 16일
게 재 확정	2009년 11월 18일